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호 6765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4072	서천호의원	2024. 9. 19.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 체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소위원회 회부
	2204594	최형두의원	2024. 10. 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 체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소위원회 회부

-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4. 11. 27.)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 4. 12. 2.)에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 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가. 우리나라는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을 주력 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누리호 발사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국내 소형발사체 스타트업 등 민간 주도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발사체 개발 기업들은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다양한 화약류에 대해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방위사업법」을 준수한 시설에서 생산하는 동일 제품을 민간 우주발사체 분야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총포화약법」기준을 준수한 시설을 별도로 구축하여 생산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민간 분야로의 공급이 현저히 위축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나. 국가 이미지 및 관련 기업들의 브랜드가치 향상, 다양한 국제 교류의 기회 제공,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행사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낸다면, 우주개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진흥의 목적으로서 박람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

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경찰청장이 군용화약류 제조 시설에서의 우주발사체 화약류 제조에 대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제조업 허가 요건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8 신설).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 메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9 신설).

법률 제 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8 및 제18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8(「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특례) ① 경찰청장은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의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에 대하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4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 화약류 및 절차 등은 우주항공청장이 경찰청장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제18조의9(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주 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18조의8(「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① 경찰청장은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의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에 대하여는 「총
	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
	은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업 허
	<u>가를 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
	상 화약류 및 절차 등은 우주
	항공청장이 경찰청장 및 방위
	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u><신 설></u>	제18조의9(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을 지원할 수 있다.